

# 명동예술극장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

성명(상호) :

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 :

주 소 :

재산의 표시 :

구 분	내 용	비 고
위 치	서울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1층 일부	
전용면적	61.76㎡	

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·수익허가(이하 “사용”이라한다) 허가합니다.

2017. 00. 00

재단법인 국립극단 예술감독 인

## 허 가 조 건

제1조(사용목적) 사용목적은 카페테리아로 한다.

제2조(사용기간) ①사용허가 기간은 2014년01월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 극장운영에 따른 시설물 활용계획에 의거 부득이 허가기간을 단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허가자는 사용인에게 2개월전 사전 통보하고 본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.

제3조(사용료) ①금년(~2017.12.31) 사용료는 금 원정 (₩)으로 한다.

②차후 연도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정한다.

제4조(사용료납부) ①사용인은 제3조의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한꺼번에

내야 한다. 이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당 극단에서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.

②사용료는 극단이 지정하는 계좌(신한은행 100-027-813442 / 재단법인 국립극단)에 입금한다.

**제5조(사용료반환)** 제11조 2호부터 7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

**제6조(사용허가의 부착)** 사용인은 사용허가 후 지체 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, 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사용허가 재산의 보존)** ①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.

②국유재산의 관리와 보존을 위한 극장 개·보수시 사용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극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시 사용인은 극단에서 요청한 기간동안 허가재산의 사용을 중지한다. 단, 그 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한다.

**제8조(사용허가재산의 부과금)** ①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(전기, 수도, 도시가스 등)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

②사용인은 관리비로 **월오십육만원(₩560,000-)정(부가가치세포함)**을 극단이 지정하는 계좌에 매월말일까지 입금하여야 한다.

**제9조(화재보험료부담)** 사용인은 사용을 허가받는 재산에 대하여 당 극단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당 극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당 극단이 부보한 경우에는 당 극단에서 부담한 보험료를 사용인이 내야 한다.

**제10조(사용인의 행위제한)** 사용인은 당 극단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.

1. 사용목적의 변경
2. 사용허가재산의 원상 변경
3. 사용허가재산에 시설물 설치

**제11조(사용허가의 취소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
2.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
3.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

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

4.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한 경우
5.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거나, 국유재산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
6. 당 극단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
7. 기타 국유재산 관계법령 또는 당극단의 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
8. 문화체육관광부와 체결한 국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

**제12조(사용허가 취소 시의 보상)** 본 허가 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극단이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.

**제13조(사용허가의 취소요청)** 사용인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는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사용재산의 반환)**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당 극단 직원의 참여하에 이를 원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당 극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.

**제15조(사용허가의 갱신 신청)**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후 사용인이 계속하여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변상금 등의 징수)**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 후 계속해서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경우에는 당 극단이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며, 사용인이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 극단에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

**제17조(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)**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하여 당 극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.

**제18조(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지시·감독)** 사용인은 사용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당 극단의 지시·감독을 받아야 한다.

**제19조(친절봉사 의무)** 사용인은 명동예술극장을 찾아오는 손님에게는 최대한 친절과 봉사할 의무를 진다.

**제20조(특수조건)** 이 허가와 관련하여 별첨의 특수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.

제21조(어구의 해석) 허가조건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 극단의 결정에 따른다.

제22조(허가서의 보관) 사용허가를 입증하기 위하여 허가서 2통을 작성하여 허가자와 수익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2017. 00. 00

허가자 : (재)국립극단 예술감독 김윤철 (인)

사용인 : (인)